

한민족어문학회 회칙

제1장 명칭 및 목적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한민족어문학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국어국문학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업 및 부서

제3조 (사업의 종류)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학회지와 연구서 발간
2. 학술발표회 개최
3. 차세대 학자 육성 사업
4. 기타 필요한 사업

제4조 (학회지 발간)

본 학회는 연 4회 이상 학회지 『한민족어문학』을 발간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논문 투고 규정에 따른다.

제5조 (학술발표회)

학술발표회는 매년 1~2회 개최한다.

제6조 (부서)

본 학회는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 부서를 두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한다.

1. 총무부
2. 연구부
3. 편집부
4. 섭외부
5. 정보부

제3장 회원

제7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1. 본 학회는 정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 기관회원을 둔다.
2. 정회원은 국어국문학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3. 명예회원은 국어국문학 분야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로 한다.
4. 특별회원은 본 회의 사업을 후원하는 자로 한다.
5. 기관회원은 공공기관 및 도서관, 단체 등으로 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 의결권·선거권·피선거권을 갖는다.
2. 명예회원은 학회의 중요한 안건에 대해 자문한다.
3. 특별회원은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각종 지원을 하여야 하고, 본 회의 각종 행사에 참여하며 출판물을 받아볼 수 있다.
4. 기관회원은 따로 정하는 회비를 납부하고,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와 기타 출판물을 받는다.

제9조 (회원의 제명)

1.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학회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2. 정회원으로 3년 동안 회비를 미납한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단, 이 규정에 의하여 제명된 사람이 미납회비를 납부하면 회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제4장 임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원)

1. 본 학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연구이사, 편집이사, 섭외이사, 정보이사, 지역이사, 평의원 및 감사를 둔다. 필요한 경우 이사를 도울 수 있는 간사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2. 임원의 구성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이내, 이사 70명 이내(평의원 제외), 감사 2명으로 구성한다.
3. 평의원은 전임 회장으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선임 방법 및 임기)

1. 회장 및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부회장, 총무이사, 연구이사, 편집이사, 섭외이사, 정보이사는 회장이 지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결원의 경우,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1. 회장 :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 :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 1) 총무이사 : 학회의 제반 업무 진행, 조정 및 회원 관리를 담당한다.
 - 2) 연구이사 : 학회의 각종 연구, 학술대회 개최 및 진행을 담당한다.

- 3) 편집이사: 학회 관련 간행물의 편집을 담당한다.
- 4) 섭외이사: 학회의 기금 확보 및 대외 관계 사업을 담당한다.
- 5) 정보이사: 학회의 제반 정보 관리 및 교류를 담당한다.
- 6) 지역이사: 각 지역의 업무를 담당한다.
- 7) 평의원: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 8) 감사: 학회의 회계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5장 총회

제13조 (총회의 기능)

1.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
2.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기타

제14조 (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나눈다.

1. 정기 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개최한다.
2.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제15조 (총회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출석 회원으로 성립한다.
2.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6장 이사회

제16조 (이사회 의결 및 기능)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본 학회 운영의 당면 문제 심의
2. 예산 및 결산 심의
3. 편집위원회 규정,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및 학술상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17조 (이사회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 인원수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된다.
2. 이사회 의결은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장 편집위원회 및 연구윤리위원회

제18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 및 각종 출판물의 출간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두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19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본 학회는 회원들의 윤리 규범 준수 의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두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8장 자산 및 회계

제20조 (재정)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및 입회비
2. 찬조금 및 후원금
3. 그 밖의 사업 수익금

제21조 (회계 연도)

본 학회의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1. 본 회칙은 1974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부칙>

1. 본 회칙은 2017년 1월 11일부터 시행하며, 그 이전의 회칙은 폐기한다.
2. 본 회칙에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임원단의 의결에 따른다.